

의안번호	제 6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월 일 (제 327 회)

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2 월 14 일

진천군·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

의안 번호	제61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2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진천·음성 혁신도시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·상업·공공청사·공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
-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주민 불편해소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 요청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※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

2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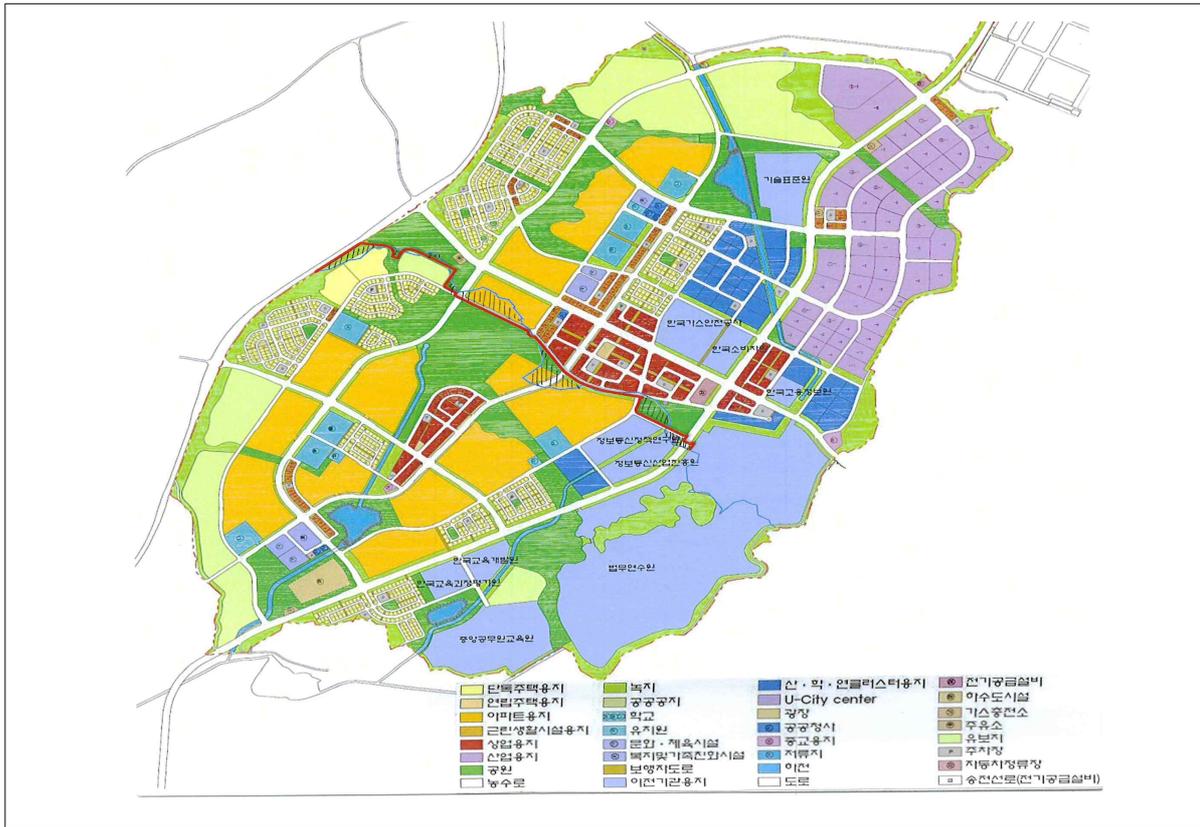
※ <추진절차> 기본계획 수립→시군의회 의견수렴→**시도의회 의견수렴**→시도지사 건의
→검토 및 대통령령안작성(안행부)→국무회의 상정→재가 및 공포

3. 주요내용

- 대상지역 (교환)

구분	편입되는 지역	편입받는 지역	비고
진천	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,176㎡	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,176㎡	조정 후 양군 면적변동 없음
음성	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0,176㎡	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0,176㎡	

○ 위치도



4. 관련기관 의견

< 진천군 >

가. 행정기관

구 분	기 관 의 견
진천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이용이 불합리한 지역의 주민생활권 일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
덕산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 필요

나. 주 민
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입주 주민이 없으며, 개발지역인 덕산면 주민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없음

다. 군 의회

- 혁신도시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 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

< 음성군 >

가. 행정기관

구 분	기 관 의 견
음성군수	• 주민생활권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일치시키고 도시 계획시설 관리와 이전 공공기관을 고려, 경계변경 필요
맹동면장	• 주민의견 수렴결과 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주민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

나. 주 민

-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현재 혁신도시 구성에 따른 개발 진행지역으로 실 거주 주민이 없어 인근 주민(맹동면) 의견수렴 결과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없음

다. 군 의회

- 혁신도시 개발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양군이 합의한 대로 조정

5. 경계변경에 대한 道 의견

-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하고 양 군의회가 동의한 사항
- 이중 공부 등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함

6.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

- 혁신도시 내 진천-음성군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道 의회 의견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2조(관계 지방의회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서 "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"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